

증거자료 목차

- 증거 1 : 행정심판위원명단
- 증거 2 : 중앙행정심판 재결서
- 증거 3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20호
- 증거 4 : 대전시청 답변서
- 증거 5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답변서
- 증거 6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답변서
- 증거 7 : 주택조합의 국공유지 현황표
- 증거 8 : 한국철도공단 답변서

증거 1

재결한 행정심판 명단

정보공개 자료

□ 사건번호 2022-01854 행정심판위원 명단

심리기일	성명	소속 및 지위
2022. 05. 10.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REDACTED]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끝.

증거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22-18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장

심 판 청 구 일 2022. 1. 2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1. 5. 17. 고시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11'인 토지(대, 244㎡, 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회덕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고, 2021. 5. 17. 「주택법」 제15조제 6항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청취나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당연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주택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이 사건 고시, 토지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9. 4. 25.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 소정의 서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은 80.3%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아래(발췌)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 **사업주체**: 회덕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쌍용건설(주)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 외 121필지
- 대지면적: 30,431.9m²
- 건축물 개요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주택형태(총세대수): 아파트 745세대

다.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시 그 인·

허가가 의제되는 관련 사항들[제5호 소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련 협의 및 심의를 한 후, 2021. 5. 17.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고시에 관한 토지편입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토지 중 192.8㎡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게 된다.

5. 이 사건 고시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 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전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6항 전단).

3)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등]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상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합이 단독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상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확보해야 할 사용권원의 비율은 80퍼센트 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80%퍼센트 이상

(80.3%)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청취나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청구인 토지의 약 2/3가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설령 이 사건 조합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의견청취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 주장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고시 자체를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 주장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2. 5.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 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회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양재완 외 1인 신청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회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양재완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97번길 86-5(읍내동))
- 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석준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신천동))

3. 시공자

- 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석준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신천동))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일원
- 사업지면적 : 42,472.6㎡
- 대지면적 : 30,431.9㎡
- 건축면적 : 5,674.9953㎡
- 건축연면적 : 111,240.3533㎡
- 건설주택의 규모 : 지하3층/지상15~25층, 공동주택 11개동(745세대), 부대복리시설
- 사업비 : 267,212,736천원
- 사업기간 : 2021. 8. ~ 2024. 5. (33개월)

증거 4
대전시청 답변서

2.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고시가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도로)에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이병준(대리인 이창용)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업명칭과 사업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명칭: 회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일원
- 사업주체
 - 회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양제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97번길 86-5(읍내동)
 - 쌍용건설(주) 김석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신정동)

다.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회덕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2019. 4. 25.) 당시 회덕지역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조합 변경인가(2020. 2. 28.) 및 이 사건 처분 신청 시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 내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44㎡중 66.9㎡를 도시기반시설(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9조에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협의 부서와 협의 과정 중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입주자의 통행 및 유발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44㎡중 192.8㎡를 도시기반시설(도로)로 지정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 검토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제1호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증거 5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답변서

민원 인쇄

신청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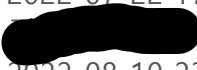
신청번호	1AA-2207-0661487
신청일	2022-07-20 16:47:42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주택법 21조에 관한건
내용	수신 법제처 내용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1. 주택법 21조는 등록 사업자와 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할 경우 95%이상의 토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국공유지 포함시 매매나 양해서류) 2. 지역주택조합이 단독 시행일 경우에는 몇 프로의 토지를 확보 해야 합니까? 3. 지역주택조합 단독 사업 주체는 조합이며 시공자가 등록사업자인00 건설일 경우 사업 주체를 단독으로 보나? 조합과 등록 사업자인 00 건설과 공동 사업 주체로 보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7-0733564
접수일	2022-07-22 17:19:24
담당자(연락처)	 01-3332)
처리예정일	2022-08-10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8-10 18:18:31

1. 평소 국토교통행정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 (회신내용)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 "등록사업자"가 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상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에 따라 등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등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효율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가목(자본금 5억원 이상, 건축 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 등,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등) 및 나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동일합니다.

○ 즉,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등록사업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에게 시공능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시행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담당함을 전제로 이러한 규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체계 상 주택조합은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사항은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예 관심에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민성,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증거 6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답변서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6-0183000
신청일	2022-06-07 14:13:04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주택법 제21조 제 1항 제1호 에 관한건
내용 발신 [REDACTED]
수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 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 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대지 면적에 대하여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상 지역주택조합이 단독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 제 1항 제1호상 조합이 사업 대지 면적에 대하여 확보해야 할 사용권원의 비율은 80퍼센트 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80%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질의내용

- 1.위 내용을 보시고 지역주택조합이 80%이상의 사용권원만 있으면 사업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등록 사업자와의 공동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조합이 단독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구단위내 토지를 몇 프로 확보해야

하나요?

3.조합 단독 시행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위 내용에 관하여 이해가 불가 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주택법 11조 에 의거 조합 설립 요건이 80%이상에 대한 (국공유지포함) 토지 사용승낙서이며

주택법 21조는 국공유지 포함 95%이상 토지 확보이며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는 매매나 양해 서류가 있으면 확보한 것으로 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256990
접수일	2022-06-09 13:55:16
담당자(연락처)	044-201-3332
처리에정일	2022-06-2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6-28 18:29:38
처리결과 (답변내용)	<p>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요건○ (회신내용)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절차 및 내용, 승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예정지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은 관할 승인권자인 시·군·구(지역주택조합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p>

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증거 7

주택조합의 국공유지 현황표

1.2.6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내 지목별 토지현황은 전체면적 42,472.6㎡ 중 철도부지가 30.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지, 전, 임야, 도로, 구거, 담 및 잡종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2.6 - 1>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대	전	임	담	도	차	구	잡	철	종
필지수	119	43	21	5	16	7	1	5	10	10	1
면적(㎡)	42,472.6	10,959.1	15,954.9	1,267.7	6,888.8	260.5	299.5	1,884.5	1,818.9	13,133.5	5.2
구성비(%)	100.0	25.8	14.0	3.0	16.2	0.6	0.7	4.4	4.3	30.9	0.1

나. 소유자별 현황

- 대상지내 소유자 현황은 조합소유의 토지가 47.1%, 사유지는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46.6%를 차지함

<표 1.2.6 - 2>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조합소유지	사유지	국유지	비고
필지수	119	62	26	31	
면적(㎡)	42,472.6	19,998.5	2,682.3	19,791.8	
구성비(%)	100.0	47.1	6.3	46.6	

증거 8

한국철도공단 답변서

매각가능여부가 매매나 양여
승낙서가 될 수 없음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6-0511380
신청일	2022-06-16 22:00:11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대덕구청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철도 공단의 답변서에 관한 건
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400-111-1111
수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처분팀
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대덕구청에 회덕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에 대한 80%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미충족 상태에서 조합 설
립 인가가 되었는지 질의한 결과
대덕구청 담당부서에서는 국유재산 토지 매각 가능 질의에 대해 한국철도시설
공단으로부터 매각 협의 요청시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유 행
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국유 일반재산을 전환 한 후 매각검토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민원인도 철도 공단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위 내용이 철도 공단에서는 매매나 양해 서류를 체결한 것으로 회신했는지?
2. 위 내용이 철도 공단에서는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라고 회신 했는지
?
3. 부산고등법원(2019.5.2선고 2018나13830)판례로 국유지 관리청이 협의과정
에서 사업시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에 동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용 승낙한 것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고 합
니다.
민원인은 철도 공단으로 부터 회덕조합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덕 구청에서는 승낙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덕구청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대덕구청 답변서.JPG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총청본부 재산지원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521753
접수일 2022-06-17 10:02:35
담당자(연락처) [REDACTED] 607-5084
처리에정일 2022-06-27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6-23 11:30:2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국유재산 토지 매각 가능여부 협의 요청(요청기관:대덕구 건축과)에 대해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주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매각협의 요청시 법적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매각검토가 가능합니다"로 회신한 내용이 매매계약 또는 양해각서 체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우리 공단은 **매각 가능여부 협의 요청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절차를 회신한 내용으로 매매계약 또는 양해각서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가' 호의 국유재산 매각절차를 회신한 내용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로 볼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조합에 승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5-0806627
신청일	2022-05-26 08:56:42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7-2외11필지(국토교통부 소유) 에 대한 사용승낙서 권한에 관한 건
내용	<p>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 [REDACTED] 수신 한국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7-2토지와 11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이며 관리청은 철도 공단 충청 본부 입니다. 읍내동 51-9번지 일대 행정 절차 이행 자료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저촉사항을 해제한 이후 편입국유지 확정시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 공단은 사용 승낙서를 승인해 주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5-0818496
접수일	2022-05-26 09:40:48
담당자(연락처)	[REDACTED] 7-5084)
처리에정일	2022-06-07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5-31 13:54:07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덕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사용승낙 승인 여부

(답변) 우리 공단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7-2 외 11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감사합니다 우편 발송도 부탁드립니다	

조합과 매매나 양해서류는
체결되지 않았음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2-0554191
신청일	2021-12-17 16:37:32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11 지구 단위 고시 결정 안에 편입된 국유지(대전광역시 대덕구 49번지.51-14등)양해각서에 관한건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 동 406-11번지 토지 주이며, 회덕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철도청 땅)가 46% 편입되었는데 이 땅에 대한 회덕 지역주택조합과 국가 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관리 운영팀에서 양해각서 또는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고자 하니 공개 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2-0594051
접수일	2021-12-20 08:57:06
담당자(연락처)	[REDACTED] 7-5084)
처리에정일	2021-12-2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1-12-27 16:14:49
-----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06-11 지구단위 결정고시 안에 편입된 국유지 양해각서 도는 매매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양해각서 또는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현재 우리공단과 회덕지역주택조합과의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조합은 매수 신청한
사실이 없음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5-0989611
신청일	2022-05-31 18:11:50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지구단위내 철도공단부지에 대한 매수 신청서 제출 여부에 관한 건
내용	<p>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11번 [redacted] [redacted]</p> <p>수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redacted]</p> <p>내용</p> <p>안녕하세요.</p> <p>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내 철도부지는(30.6%)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p> <p>관리청인 철도공단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7-2외11 필지는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장래사용계획 등이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를 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 방법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p>

매수 신청서 제출 - 지역본부접수 - 현장방문/장래사용계획조회 - 용도폐지승인 - 처분승인 - 매각예정가격결정 - 일반경쟁 입찰(낙찰자선정)또는 수의매각 - 매매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의 절차에 대한 내용 답변을 철도 공단으로 부터 회신 받았습니니다.

그렇다면, 회덕지역주택조합은 현재(2022.05.31) 철도 부지 국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서를 접수 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023279
접수일 2022-06-02 09:16:41
담당자(연락처) [REDACTED] 607-5084)
처리에정일 2022-06-13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6-07 13:55:4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2022.5.31. 현재 회덕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구역 내 편입되는 철도부지(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7-2외 11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서 제출 여부
나. (답변)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매수 신청한 사실이 없음**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감사합니다 다른 민원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저촉사항 해지되지 않음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았음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1-0364665
신청일	2022-01-12 22:14:59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철도공단 부지(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대한 회덕지역주택조합과 철도공단의 협의서에 대한 건
내용	발 신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REDACTED] 수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11 회덕지역주택조합 시구단위에 편입된 토지주 자녀 민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파일	철도공단 국민신문고.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1-0364696
접수일	2022-01-13 08:52:16
담당자(연락처)	[REDACTED] 5084)
처리에정일	2022-01-21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1-19 17:32:2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철도공단 부지에 대한 매수신청서 제출여부

(답변) 2019년에 국유재산 매각협의 요청은 하였으나 매수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

나.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은 2필지외 다른 10필지에 대한 저촉사항 해지 여부

(답변)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저촉사항은 해지되지 않았음

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여부

(답변) 현재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았음

라. 철도공단에 재협의 요청 여부

(답변) 현재 재협의 요청은 없으나, 대전시 대덕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임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한국자산관리 캠프코 답변서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3-0751802
신청일	2022-03-25 14:11:57
신청인	[REDACTED]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REDACTED] 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대전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캠코)에 대한 매수나 양해 각서에 관한 건
내용	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6-11번지 [REDACTED] 수신 캠코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자 [REDACTED] (601-5146) 내용 대전회덕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에 대해 매매나 양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데 담당자인 나현지 대리님은 없다고 하시니 지금 어떤 상황이며 매수 신청서가 접수 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매매나 양해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라 할 수 있나요?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3-0822763
접수일	2022-03-29 14:14:21
담당자(연락처)	남미경(051-794-3212)
처리에정일	2022-04-06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4-06 12:56:29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전 기회신된 바(22.01.10, 22.01.20)와 같이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된 바는 없으며, 편입 국유지에 대해서 현재 대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매매 협의와 관련한 사항은 국유지 피대부자인 회덕지역주택조합원 대표와 협의하며, 이외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덕지역주택조합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 7호, 8호

[담당자 :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리 나현지 (042-601-5146)]

첨부 파일

무상귀속대상이 아님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6-0131675
신청일 2022-06-05 14:01:23
신청인 [REDACTED]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REDACTED]
호 [REDACTED]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대전 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지구내 국유지에대한 무상귀속에 관한 건
내용 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406-1 [REDACTED]
수신 조달청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회덕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 공단 관리청인 지구단위내 (법동402번지 외 2필지 와 읍내동49번지외 11필지 - 총15필지) 에 포함된 부지의 무상 귀속 검토를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국유지에 대한 무상 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조달청 (조달청 조달관리국 조달등록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143807
접수일 2022-06-07 09:09:10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6-09 15:00:5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1316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덕지역주택조합 도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우리 청에 요청한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대한 검토 결과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 대덕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법동 402번지 등 15필지의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문의

3.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덕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요청한 국유지 15필지에 대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을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하광준(042-724-64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관리과장

첨부 파일

무상허가 대상이 아니며
수의계약체결은 안되었음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6-0097953
신청일	2022-06-04 10:01:34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지구내 법동402번지외2필지와 읍내동49번지외11필지에 대한 수의 계약에 관한 건
내용	<p>발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0 [REDACTED]역주택조합 지구단위내 부지) 수신 국가철도공단 충청 [REDACTED] 내용 안녕하세요.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는 회덕지역주택사업 지구내 국토교통부 소유 관리청인 철도공단 부지(법동402번지외2필지와 읍내동 49번지외 11필지)에 대해 철도공단과 수의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홈페이지 매각 안내사항에는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는데 회덕지역조합은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 인지 와 수의 계약 체결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151971
접수일	2022-06-07 09:35:27
담당자(연락처)	[REDACTED]-5084)
처리에정일	2022-06-15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6-14 19:25:1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회덕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구역 내 편입되는 철도부지(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7-2외 14필지)에 대해 무상사용허가 대상여부와 수의계약 체결 여부

나. (답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공단과 수의계약 체결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감사합니다	